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박주용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폐농약에서 영농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여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지급
2. 폐농약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농약 등 수거함 설치
3.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약관리법」(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21.8.17. 타법개정, 2023.1.1. 시행)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2025.10.1. 타법개정, 2025.10.1. 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5.4.4. 일부개정, 2025.10.5. 시행)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
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농약 등의 수집 ·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거보상비, 수거함 설치 및 집하시설 운영 지원 등과 사무위탁에 따른 위탁 수행 비용 및 정산 관리 등에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4조~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 현재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등 관련 예산은 약 5,200만 원 규모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며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 지원계획 수립과 수거함 설치 및 집하시설 운영 지원 등은 행정적·기술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산 소요를 사전에 산정하기 어려움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곽 동 환 (☎ 2057)